

1. 당헌 신규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제49조(지위와 구성)</p> <p>① 지역위원회는 시·군·구에 설치하며 해당 시·군·구 소속 당원을 총괄하며 대표한다. 단, 지역위원회는 시·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인근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,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지역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.</p> <p>③ 지역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.</p> <p>④ 지역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	<p>제49조(지위와 구성)</p> <p>① -----.</p> <p>② 지역위원회에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.</p> <p>③ -----.</p> <p>④ -----.</p>
<p>제51조(운영위원회)</p> <p>①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일상적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</p> <p>1.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</p> <p>2. 지역위원회 소속 단체장 및 지방의원</p> <p>3.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</p> <p>②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당원총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 사항 집행</p> <p>2. 지역위원회 일상 사업 의결 및 집행</p> <p>3. 지역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</p> <p>4. 지역위원회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른 권한</p> <p>③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월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, 운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.</p>	<p>제51조(운영위원회)</p> <p>①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일상적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</p> <p>1.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</p> <p>2. -----.</p> <p>3. -----.</p> <p>② -----.</p> <p>③ -----.</p>

